

- 자판기 영업신고 일괄신고 범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 자판기 영업자 위생교육 2년마다 받도록 완화

## 자판기 관련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 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이율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반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반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 자판기 관련 개정법률안 핵심내용 및 협회 의견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제27조 (영업의 신고)

③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시·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영업의 신고등)<br>① · ② (생 략)<br>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 · 면 · 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27조(영업의 신고등)<br>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br>-----<br>-----시 · 군 ·<br>구----- |

### □ 기대효과

앞으로 식품자판기 영업신고를 광역시의 경우는 구단위로, 일반시와 지방군의 경우는 해당 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일괄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영업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자면 서울 광진구에 커피자판기를 다량 신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한 영업신고서에 모든 자판기를 기재해 신고가 가능해 진다.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의 경우는 시전체가 대상이 된다. 충북의 청주시에 커피자판기를 다량 신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한 영업신고서를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이처럼 자판기를 다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은 이번 개정에 있어 큰 혜택을 받게 되었다. 과거만해도 곳곳에 산재된 자판기를 따로 신고를 하다보니 불편과 행정낭비가 무척 컸다.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신고의 범위 확대는 OP업체들의 영업신고의 편리성을 크게 증진시켜 자판기 운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마련해 주게 된다.

### □ 협의 의견

본 협회에서는 OP업체들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 영업신고의 편리성이 크게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現개정령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 식품위생법 개정령안

식품위생법 27조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 ① 영업자는 2년마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7조 (위생교육)</p> <p>① 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 <p>제27조 (위생교육)</p> <p>① 영업자는 2년마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기대효과

이로써 자판기 위생교육은 자판기 운영 최초 년도는 4시간, 최초 후 2년마다는 2시간씩 재교육을 받도록 바뀌게 된다.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협의 의견서

위생교육을 2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되, 더욱 규제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 &lt;관련내용&gt;

그간 커피자판기를 부업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운영자까지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많은 운영자 불만과 원성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령에는 이러한 운영자 불만이 반영되어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협회에서는 일단 완화된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자판기를 운영하는 자판기 운영자들은 영업신고 후 최초 1회만 교육을 받아도 충분하다는 것이 산업계 입장입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커피자판기는 제품 자체의 위생성 향상 기능이 잘 갖추어져 있어 운영자가 기본적인 관리만 하면 별다른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커피 내용물의 특성상 설사 위생적인 관리에 소홀히 한다하더라도 식중독 같은 심각한 위생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판기 운영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운영자들은 자신의 본업을 가지고 있고 부업으로 자판기 1~2대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는 자로, 바쁜 본업에도 불구하고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도 큰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불만만 가득해 마지못해 2년마다 받는 교육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한번의 위생교육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입니다.



본 협회는 이러한 산업계의 희망을 수렴해 위생교육을 신규운영자만 한번 받으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현행 자판기 위생교육은 자판기분야의 직능단체가 아닌 다방면 분야의 한국휴게실업중앙회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자판기 분야 동업종 단체에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게 훨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적극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